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2003. 9. 29, 정진항의원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

설치에관한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참 조

4. 검 토 의 견 : 별 첨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 10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궘 태 환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정진항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 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또는모·부자가정세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신체의 부자유, 노약,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계층에 대하여 생업을 지원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장은 공공시설물에 자판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1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자격 및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모·부자세대에 한함(안 제4조).
- 라.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계약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보다 우선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우선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5조).
- 마.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 2급 이상인 자는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 바. 계약위반, 자동판매기 관리 태만, 사망, 공익상 필요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정진항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시설물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계층에 대하여 생업을 지원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전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매점의 경우는 1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설치허가 또는 위탁토록 하고, 설치를 허가또는 위탁할 경우 1월전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하며, 자격 및 신청대상자는 20세이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모·부자 세대로 한정하고,계약기간은 3년으로 함.

또한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장애인 2급이상인 자는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 복지법에 우선 반영토록 근거규정에 의거 조례로 명확히 하여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운영자의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